

대 학 원 학 칙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서강대학교 각 대학원(이하 ‘각 대학원’ 이라 한다)은 서강대학교 학칙 제1조에 규정된 대학교육의 목적을 일층 심오하게 추구하여 학술연구와 진리탐구에 있어서의 고도의 능력과 독창력을 함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우리 대학교 각 대학원에는 일반대학원인 대학원, 전문대학원인 신학대학원, 국제대학원, 영상대학원, 경영전문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 기술경영전문대학원(이하 “각 전문대학원” 이라 한다)과 특수대학원인 공공정책대학원, 교육대학원, 경제대학원, 언론대학원, 정보통신대학원(이하 “각 특수대학원” 이라 한다)을 둔다. 다만, 본 학칙 제3조 이하의 “각 대학원” 및 “각 전문대학원” 에 법학전문대학원은 제외한다.<개정 2010.10.29>

제3조 (학위과정) 각 대학원에는 아래와 같은 학위과정을 둔다.

- ① 대학원에 석사과정, 박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을 둔다.
- ② 각 전문대학원에 석사과정, 박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을 둔다.
- ③ 각 특수대학원에 석사과정을 둔다.
- ④ 대학원과 각 전문대학원에 학과간협동과정과 학·연·산협동과정을 둘 수 있다.

제3조의 2(계약학과 설치·운영 등)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의하여 학과 또는 전공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미 설치되어 있는 학과·전공을 우선 활용하여야 한다.<본항신설 2014.10.23.>

- ② 계약학과의 명칭, 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 학생 선발의 기준 및 방법, 학생정원, 운영 경비, 학생의 수업료, 학기 및 수업일수, 설치·운영기간 등 세부사항은 각 대학원별 세칙으로 정한다.<본항신설 2014.10.23.>

제4조 (학과전공 및 정원) ① 각 대학원 학위과정별 학과전공 편성 및 학생정원은 '별표 1' 과 같다.

-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개정 2013.7.19>

1. 교육부령이 정하는 위탁학생
2.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3. 북한이탈주민
4.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의 교육과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 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
5.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9조에 따라 계약에 의하여 운영하는 대학원 교육과정에 입학하는 학생<본호신설 2014.10.23.>

제5조 (수업) 대학원 및 각 전문대학원의 수업은 주간에 각 특수대학원의 수업은 야간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각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은 후 수업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 2 장 수업연한과 재학연한

제6조 (수업연한) ① 석사 및 박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은 각각 2년, 석·박사통합과정의 수업연한은 4년으로 한다. 다만, 신학대학원 석·박사과정 및 각 특수대학원 석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은 2년 6월로

하며, 신학대학원 석·박사 통합과정의 수업연한은 5년으로 한다. <개정 2010.6.18., 2010.10.29., 2014.10.23.>

② 전항에 있어서의 수업연한이라 함은 학위취득에 필요한 최단 등록기간을 말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대학원별 세칙으로 정한다.

제7조 (재학연한) ① 석사학위과정의 재학연한은 3년, 박사학위과정의 재학연한은 5년, 석·박사 통합과정의 재학연한은 8년으로 한다. 다만, 신학대학원 석사과정, 각 특수대학원은 4년으로 한다. <개정 2010.6.18., 2010.10.29., 2014.10.23.>

② 전항에 있어서의 재학연한이라 함은 수료를 위하여 허용된 최장 등록기간을 말한다.

③ 재학연한의 연장에 관한 사항은 각 대학원별 세칙으로 정한다.

제 3 장 입학, 편입학 및 재입학

제8조 (입학시기) 각 대학원의 입학시기는 매 학기 개시일로부터 2주 이내로 한다.

제9조 (입학자격) ① 각 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각 대학원에서 실시하는 전형에 합격한 자라야 한다.

1. 석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2. 박사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석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② 본교 전임교원은 각 대학원에 입학할 수 없다.

제10조 (입학지원 및 전형) ① 각 대학원에 입학할 지원자는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각 대학원의 입학전형은 서류심사, 필기시험, 면접 등으로 시행한다.

③ 입학전형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대학원별 세칙으로 정한다.

제11조 (편입학) 타대학원에 재학중이거나 졸업한 학생은 총장의 승인을 거쳐 편입학 할 수 있다. 편입학 자격, 시행 방법, 학점 인정 등의 사항은 각 대학원별 세칙으로 정한다.

제12조 (재입학) ① 자퇴한 자 또는 제적된 자가 재입학을 지원할 때에는 정원의 범위 내에서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재학연한 경과, 성적미달, 징계에 의하여 제적된 자 또는 첫 학기를 이수하지 못하고 자퇴한 자에게는 재입학을 허가하지 않는다.<개정 2015.2.9.>

② 재입학은 1회에 한한다. 재입학 자격, 시행 방법, 학점 인정 등의 사항은 각 대학원별 세칙으로 정한다.

③ 위 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학원, 각 전문대학원, 각 특수대학원별로 학위논문제출 연한이 만료된 자가 특별재입학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해당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1회에 한하여 특별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5.2.9.>

제 4 장 등록, 휴학, 복학, 자퇴, 제적 및 수료

제13조 (등록) 전형에 합격한 신입생 및 재학생은 매학기 소정기일 내에 소정절차에 따라 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

제14조 (등록금의 이월 및 반환) ① 군입대 휴학자의 경우 증빙에 의하여 등록금 및 기타 납입금을 이월 받을 수 있다.

- ② 등록금을 납입한 후 일반휴학 및 자퇴를 할 경우 등록금 반환 또는 이월을 원칙으로 하며 반환 또는 이월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의거 각 대학원별 세칙으로 따로 정한다.
- 제15조 (휴학) ① 질병, 병역,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1개월 이상 계속 수강할 수 없을 때에는 휴학원을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휴학은 통산하여 석사 및 박사학위과정은 4학기, 석·박사 통합과정은 6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군복무나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한 휴학기간은 그 증빙에 의하여 휴학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개정 2012.7.16., 2013.7.19., 2015.2.9.>
- ② 각 대학원 특성에 따른 휴학 기간, 장기 휴학 등 세부 사항은 각 대학원별 세칙으로 정한다.<개정 2015.2.9.>
- ③ 신(편)입생은 입학 후 첫 학기에 휴학을 할 수 없다. 다만 질병, 병역, 지방(해외)발령 및 임신·출산·육아에 한하여 휴학을 허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 사항은 각 대학원별 세칙으로 정한다. <본항 신설 2013.7.19.> < 개정 2013.12.16.>
- 15조의2 (직권휴학) ① 총장은 정신 질환, 건강상 이유 등 기타 특수한 이유로 자신의 건강과 안전 또는 타인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 자에게 1차적으로 비상대책위원회를 통하여 병원 치료, 학생생활 상담연구소에서의 지속적 상담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이를 거부, 기피하거나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휴학을 명할 수 있다. <본항 신설 2015.5.29.>
- ② 총장은 본조와 같은 직권 휴학자의 휴학 연한에 대하여 학칙 제1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경과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본항 신설 2015.5.29.>
- 제16조 (복학) 휴학자의 복학은 정하여진 기일 내에 소정의 절차를 거쳐 복학원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17조 (제적, 자퇴)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적한다.
1. 제7조에 규정된 재학연한이 경과하여도 수료하지 못한 자.
 2. 제15조에 규정된 휴학기간이 종료하여도 복학하지 아니한 자.
 3. 매학기 소정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않은 자.
 4. 전 과목의 총평점평균 성적이 각 대학원별 해당 기준에 미달인 자.
- ②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 제18조 (수료) 수료를 위해서는 각 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을 이수하고,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제 5 장 전과, 전공변경 및 복수전공<개정 2014.02.20>

제19조 각 대학원 학과간의 전과, 동일학과 내 전공변경 및 복수전공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대학원별 세칙으로 정한다.<개정 2014.02.20>

제 6 장 교과와 학점

- 제20조 (교과목) 각 대학원 학과, 전공별 교과과정 및 이수학점에 관한 사항은 각 대학원별 세칙으로 정한다.
- 제21조 (교과목 이수계획지도) 학생은 각 학위과정에 입학 후 학과장 또는 전공주임교수의 지도를 받아 교과목 이수계획을 세워야 한다.
- 제22조 (수료 학점) 각 대학원별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의 수료를 위한 최저 이수학점은 '별표 2' 와 같다.
- 제23조 (부전공학점) 대학원 및 각 전문대학원에서 학과(전공)별로 부전공 제도를 시행할 수 있으며, 이

에 대한 세부사항은 각 대학원별 세칙으로 정한다.

제24조 (학기당 수강학점) 각 대학원의 학기당 수강학점은 대학원 12학점, 각 전문대학원 15학점(영상대학원 12학점), 각 특수대학원 6학점을 초과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하되, 추가 수강신청에 관한 사항은 각 대학원별 세칙으로 정한다.<개정 2014.10.23.>

제25조 (학점 인정) 국내·외 다른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은 법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각 대학원별로 이를 우리 대학교 각 대학원 이수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대학원별 세칙으로 정한다.

제25조의 2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의 대학과 공동으로 대학원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대학원별 세칙 등으로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2.12>

제26조 (국내외 타 대학원과 교류) ① 국내외 타 대학원과의 협정에 따라 학점, 학생 등의 교류를 할 수 있다. <본항 신설 2013.7.19.>

② 각 대학원생이 각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타 대학원과 합의된 교과목을 이수할 경우 각 대학원 이수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각 대학원별 세칙으로 정한다.

제27조 (학위과정의 연계) 학부교육과정과 일반대학원 교육과정을 상호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세칙으로 정한다.

제27조의 2 (학·석사공용과목) ① 6학기 이상 이수하고 총평점평균 3.0이상인 학부학생은 학·석사공용과목을 이수할 수 있다.

② 우리 대학교 학부 학생으로서 학·석사공용과목을 이수하여 평점 3.0 이상을 받고 대학원에 진학하는 경우 9학점 범위 내에서 학·석사공용과목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인정할 수 있는 학점은 학부과정의 졸업소요학점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제 7 장 학업성적

제28조 (학업성적) ① 학업성적의 등급과 평점은 다음과 같다.

| 등 급 | 평 점 |
|----------------|-----|
| A ⁺ | 4.3 |
| A ⁰ | 4.0 |
| A- | 3.7 |
| B ⁺ | 3.3 |
| B ⁰ | 3.0 |
| B- | 2.7 |
| C ⁺ | 2.3 |
| C ⁰ | 2.0 |
| F | 0 |

② 성적제출 마감일까지 학업성적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I(성적미확정)기호를 부여하여 성적표를 제출하고 성적제출 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확정된 학업성적 등급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성적등급 이외의 평가에 대한 사항은 각 대학원별 세칙으로 정한다.

제29조 (수업출석) 학생은 수강신청한 전 과목의 수업에 출석하여야하며 각 과목별 결석 일수가 전 수업시간의 1/4(각 특수대학원은 1/3)을 초과할 때에는 해당과목의 학점을 취득할 수 없다.

제30조 (학점취득) 학점은 성적평점 2.0 이상을 취득학점으로 계산하되 졸업사정에 있어서는 전 교과목의 총성적 평점평균이 3.0이상이어야 한다.

제31조 (재이수) 학업성적을 향상시키기 위해 이미 이수한 과목 중 일부를 재이수할 수 있다.

제 8 장 자격시험

제32조 (구분) 각 대학원에서 실시하는 논문제출 자격시험은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으로 구분한다.

제33조 (외국어시험) 외국어시험의 시행 여부,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대학원별 세칙으로 정한다.

제34조 (종합시험) 종합시험의 시행 여부,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대학원별 세칙으로 정한다.

제 9 장 학위논문

제35조 (논문제출 승인서) 자격시험에 합격한 학생은 논문제출 승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6조 (학위청구논문 제출) ①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 학생의 논문제출 연한은 각 대학원별 세칙으로 정한다.

② 석사학위과정 학생은 학위수여일 3개월 전에, 박사학위과정 및 석.박사 통합과정 학생은 학위수여일 4개월 전에 학위청구논문을 각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논문제출시 논문심사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37조 (논문심사위원회) ① 학위청구논문심사는 논문심사위원회가 행한다. 심사위원은 논문제출자의 전공분야나 인접분야의 교수 혹은 사계권위자 중에서 위촉한다.

② 심사위원은 석사학위는 3인, 박사학위는 5인으로 한다.

③ 학위청구논문 심사의 합격판정은 석사학위는 심사위원 2인 이상, 박사학위는 심사위원 4인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38조 (논문심사결과 보고) 주심은 논문심사결과를 소정 기일 내에 각 대학원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각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심사를 연기할 수 있다.

제38조의 2(박사학위논문의 공표) 박사학위를 받은 자는 그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박사학위논문을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부장관이 그 공표가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3.7.19>

제 10 장 학위수여

제39조 (학위수여) ① 각 대학원별 각 과정의 수업연한을 이수하여 소요학점을 취득한 자로서 소정의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학위청구논문이 심사를 통과한 자 또는 각 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별 학위수여요건을 완료한 자에게는 총장이 '별표 3'의 학위를 수여한다.

② 제①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대학과의 공동명의로 학위 또는 복수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③ 일반대학원에서는 학술학위를 수여하고, 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에서는 전문학위를 수여한다.

다. 다만, 전문대학원의 경우 학문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 각 전문대학원 운영위원회 및 대학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술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④ 전문학위를 표기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위명 다음에 괄호를 한 후 해당 전공명(전문분야)을 표기함을 원칙으로 한다.

⑤ 학위수여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대학원별 세칙으로 정한다.

제40조 (학위수여요건) 각 대학원별 학위수여요건은 '별표 4' 와 같다.

제41조 (학위기) ① 석사학위 수여는 별지 서식(1)에 의한 학술학위와 별지서식(1-1)에 의한 전문학위의 학위기로서 행한다.

② 박사학위 수여는 별지 서식(2)에 의한 학술학위와 별지서식(2-1)에 의한 전문학위의 학위기로서 행한다.

제42조 (학위수여 취소) 학위를 받은 자가 그 학위과정 이수 중에 학생신분에 위배되는 행위가 있었음이 밝혀졌을 경우 또는 학위를 받은 후 그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총장은 학위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제 11 장 명예박사학위

제43조 (자격) 우리나라의 문화와 학술에 크게 공헌하였거나 인류문화 향상에 공적이 현저한 자에 대하여는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제44조 (수여절차) ① 명예박사 학위수여의 의결은 대학원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다.<본항 신설 2015.5.29., **개정 2015.10.12.**>

② 명예박사학위의 수여는 대학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이 이사장과 협의하여 이를 행한다.

③ 명예박사학위 수여는 별지 서식(3)에 의한 학위기로서 행한다.

제45조 (명예박사학위 종별) 본 대학교에서 수여하는 명예박사학위의 종별은 이를 받는 자의 공헌 또는 공적의 성질에 따라 본 학칙 제39조에 의하여 구분한다.

제 12 장 공개강좌 및 연구생

제46조 (공개강좌) ① 각 대학원에 공개강좌를 둘 수 있다. 공개강좌는 각 대학원 정상수업에 지장이 없는 한 직무, 교양 또는 연구를 위한 학식 또는 기술의 습득을 희망하는 자를 널리 지도함을 목적으로 행할 수 있다.

② 공개강좌의 과목 또는 제목, 기간, 수강인원, 장소 및 기타에 관한 세부 사항은 각 대학원별 세칙으로 정한다.

제47조 (연구생) ① 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각 대학원 강의를 수강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소정의 심사를 거쳐 연구생의 자격으로 수강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연구생은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수강에 의한 학점은 부여되지 않는다

③ 연구생으로서 연구실적이 양호한 자에게는 소정의 연구실적 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제 13 장 장학금, 상별

제48조 (장학금, 연구보조금) 각 대학원 학생으로서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에게는 장학금 또는 연구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49조 (납입금 감면) 소정의 수업연한을 만료하고 소요학점을 취득한 자에게 납입금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50조 (상벌) ①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또는 선행이 현저하여 타의 모범이 될 만한 자에 대하여는 각 대학원장의 추천에 의해 총장이 포상할 수 있다.

② 학생으로서 그 본분에 위배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총장이 이를 징계처분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사항은 각 대학원별 세칙으로 정한다.

제 14 장 학생활동

제51조 (학생회) ① 각 대학원 학생의 자치활동기구로 각 대학원에 학생회 또는 원우회를 둘 수 있다.

② 학생회 및 원우회의 운영 및 회칙에 관한 사항은 각 대학원별 세칙으로 정한다.

제 15 장 대학원위원회

제52조 (설치) 대학원에 대학원위원회를 둔다.

제53조 (구성) 대학원위원회는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하는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대학원장으로 한다.

제54조 (임기) 위원(당연직 위원 제외)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중임할 수 있다.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5조 (기능) 대학원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입학·수료 및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
2. 학위과정·학과(부)·전공의 설치·폐지와 입학정원에 관한 사항
3.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4. 대학원에 관한 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5. 기타 대학원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56조 (운영위원회) 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의 각 대학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대학원별 세칙으로 정한다.

제57조 (학과 대학원운영위원회) 각 대학원 학과, 전공별로 대학원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 16 장 학칙 개정

제58조 (학칙의 개정) 학칙 개정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대학원위원회에서는 학칙 개정안에 대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각 대학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칙 개정안을 심의·의결하며, 총장은 대학원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학칙개정안을 확정한다.
2. 학교는 개정된 학칙을 법인과 교육부에 보고한다.<개정 2013.7.19.>

제 17 장 기 타

제59조 (준용규정) 이 학칙에 규정된 것 이외의 사항에 관하여는 본 대학교 학칙을 준용한다.

제60조 (별도 학칙 및 시행세칙 등) ① 법학전문대학원의 학생정원, 입학, 학위과정 등 학사에 관한 제반 사항은 별도의 학칙으로 따로 정한다.

② 이 학칙 시행 상 필요한 세칙은 각 대학원별로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부 칙

1.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규정) 이 학칙의 시행과 동시에 대학원학칙, 신학대학원 학칙, 국제대학원 학칙, 영상대학원 학칙, 경영대학원 학칙, 공공정책대학원 학칙, 교육대학원 학칙, 경제대학원 학칙, 언론대학원 학칙, 정보통신대학원 학칙은 폐지한다.
③ (소속) 이 학칙 시행일 현재 서강대학교 각 대학원에 재적중인 학생은 서강대학교 각 대학원 해당학기에 각각 재적중인 것으로 한다.
④ (경과규정) 이 학칙 부칙 1의②항에 의하여 구 학칙이 폐지됨에 따라 이 학칙의 시행 당시의 각 대학원 재학생에게 불리하게 될 경우에는 구 학칙을 적용한다.
2. 이 개정 학칙은 200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개정 학칙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이 개정 학칙은 200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이 개정 학칙은 2005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6. 이 개정 학칙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7. 이 개정 학칙은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8. ①(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06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개정 학칙의 시행으로 폐지되는 경영대학원 학생에게는 재적생이 모두 졸업할 시점까지 개정 전 학칙을 적용하며, 개정 학칙 중 제6조 ①항의 신학대학원 석·박사과정 수업연한과 <별표2>의 신학대학원 수료학점, <별표4>의 신학대학원 학위수여 요건은 2007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9. 이 개정학칙은 2007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10. ①(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07년 8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영상대학원에서 언론대학원으로 이관한 정원조정에 관한 사항은 2008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규정) 이 개정 학칙의 시행 이전에 입학한 영상대학원 학생들은 재적생이 모두 졸업할 시점까지 개정 전의 학칙을 적용한다.
11. 이 개정 학칙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2. 이 개정 학칙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13. ①이 개정 학칙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교육대학원 교육공학-교육행정 융합전공에 대한 전공명 및 수여학위 표기에 관한 사항과 2008년 9월 1일자로 변경된 평생교육전공에 대한 수여학위 표기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2009학년도 2학기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14. ①(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및 제60조 개정사항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심리학과 신설 및 학과간 협동과정 석·박사학위과정간 입학정원 조정에 따른 학칙 제4조 <별표1>, 제22조 <별표2>, 제39조 <별표3>의 관련 개정사항은 2010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15. ①(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1. 경영전문대학원의 석사 및 박사학위과정 서비스시스템경영공학과 신설에 따른 학칙 제4조 <별표1>, 제22조 <별표2>, 제39조 <별표3>의 관련 개정사항은 2010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하고, 석사 및 박사학위과정 경영컨설팅학과 신설에 따른 학칙 제4조 <별표1>, 제22조 <별표2>, 제39조 <별표3>의 관련 개정사항은 2009년 8월 31일(2009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2. 학칙 제19조에도 불구하고 경영전문대학원 경영학과 주간MBA과정 및 박사학위과정 2009년 3월 입학생중 관리·컨설팅, 서비스사이언스·컨설팅, 금융·컨설팅전공 희망자는 2009학년도 2학기에 한정하여 경영컨설팅학과로 전과할 수 있다.

부 칙(2010.2.12)

제1조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① 학칙 제22조 별표2의 개정 규정중 영상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영상예술 전공의 42학점으로 수료학점 개정 및 공공정책대학원 사회복지학과의 27학점으로 수료학점 개정에 관한 사항은 2010학년도 1학기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② 학칙 제40조 별표4의 개정 규정중 공공정책대학원 사회복지학과의 30학점으로 졸업학점 개정에 관한 사항은 2010학년도 1학기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공공정책대학원 학과신설 및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① 학칙 제19조에도 불구하고 이 개정 학칙의 시행 이전에 입학한 공공정책대학원 사회복지정책학과 학생들에게 1회에 한하여 사회복지학과나 사회문화정책학과로 전과를 허용하며, 사회복지학과로 전과한 학생들에게는 개정 전의 학칙을 적용한다.

② 공공정책대학원의 폐과된 3개학과(일본학과, 동남아학과, NGO학과)의 학생으로서 재입학을 원하는 자는 소속 학과 명칭과 동일한 전공이 있는 국제관계·통상의교학과나 사회문화정책학과로 전과하여 소속을 변경한다.

부 칙(2010.3.12)

이 개정 학칙은 2010년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경제대학원 경제이론 전공 신설 관련 학칙 제4조 제1항 별표1 및 제39조 제1항 별표3의 개정 규정은 2010년 8월 30일(2010학년도 제2학기)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6.18)

제1조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0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학칙 제4조 제1항 별표1, 제22조 별표2, 제39조 제1항 별표3, 제40조 별표4의 개정 규정은 2011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다만, 공공정책대학원 정치경영학과에 관한 학칙 제4조 제1항 별표1, 제39조 제1항 별표3의 개정 규정은 2010년 8월 30일(2010학년도 제2학기)부터, 학칙 제39조 제1항 별표3의 사회복지학과 전공 선택은 이 개정 학칙 시행일로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0.10.29)

제1조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0년 10월 30일 부터 시행한다. 다만,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설치 및 대학원간, 일반대학원의 학위과정간 입학정원 조정 등에 따른 학칙 제4조 제1항 별표1 개정규정과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설치에 따른 학칙 제22조 별표2, 제39조 제1항 별표3, 제40조 별표4의 개정규정은 2011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제2조 (영상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영상예술전공의 수업연한, 수료학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영상대학원 석

사학위과정 영상예술전공에 대한 학칙 제6조 제1항, 제7조 제1항, 제22조 별표2, 제40조 별표4의 개정규정은 2011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하며, 2010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학칙에 따른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11.5.6)

이 개정 학칙은 2011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8.26)

제1조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1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학칙 제22조 별표2의 대학원 경제학과 석사학위과정 수료학점에 관한 개정규정은 2012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하며, 2011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학칙에 따른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12.1.16)

제1조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2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① 학칙 제39조 제1항 별표3의 바이오융합기술협동과정의 학위명칭 변경은 2012년 2월 졸업자부터 적용한다.

②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기술경영학전공에 대한 학칙 제22조 별표2, 제40조 별표4의 개정규정은 2011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제3조 (교육대학원 전공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교육대학원 독어교육전공, 불어교육전공은 2012년 3월 1일자로 폐지하되, 폐지일 현재 동 대학원에 재적중인 학생은 졸업시까지 계속하여 동 대학원 해당 전공의 재적생으로 보며 종전의 학칙에 따른다.

부 칙(2012.2.10)

이 개정 학칙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7.16)

제1조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2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학칙 제15조 제1항의 개정 규정은 2012년 9월 1일부터, 공공정책대학원 행정·법무·환경학과로의 명칭 변경과 정보통신대학원 정보통신시스템 전공으로의 명칭 변경 및 정보통신 전공 폐지에 따른 학칙 제4조 제1항 별표1, 학칙 제39조 제1항 별표3의 개정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① 대학원 심리학과 박사학위과정, 중국문화학과 석사학위과정, 동남아시아학 학과간협동과정 석사학위과정 신설에 따른 학칙 제4조 제1항 별표1, 제22조 별표2, 제39조 제1항 별표3의 개정 규정과 정보통신대학원 정보보호 전공 신설에 따른 학칙 제4조 제1항 별표1, 학칙 제39조 제1항 별표3의 개정규정은 2013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② 학칙 제39조 제1항 별표3의 경영전문대학원 글로벌서비스경영학과의 학위명칭 변경은 2012년 8월 졸업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 (학과, 전공 폐지 및 명칭 변경 등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개정 학칙 시행 당시 종전 학칙의 경영전문대학원 서비스시스템경영공학과에 재적중인 학생은 동 대학원 글로벌서비스경영학과 재적생으로, 정보통신대학원 정보통신 전공과 정보시스템 및 보호 전공에 재적중인 학생은 동 대학원 정보통신시스템 전공 재적생으로 본다.

② 공공정책대학원 환경정책학과는 2013년 3월 1일자로 폐지하되, 폐지일 현재 동 대학원 환경정책학과에 재적중인 학생은 계속하여 동 대학원 동 학과의 재적생으로 보며 종전의 학칙을 적용한다. 다만 재입학을 원하는 자는 동일한 전공이 있는 행정·법무·환경학과로 소속을 변경한다.

부 칙(2013.7.19.)

제1조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3년 7월 20일 부터 시행한다. 다만, 철학과, 종교학과의 대학원 박사 수여학위 표기 변경에 따른 학칙 제 39조 제1항 별표3의 개정 규정은 2013학년도 8월 졸업생부터 ,제4조 제2항 제3호와 제15조 제1항,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대학원 경영학과 석사학위과정 신설에 따른 학칙 제4조 제1항 별표1의 개정 규정과 언론대학원 스포츠·엔터테인먼트전공 신설에 따른 학칙 제4조 제1항 별표1, 학칙 제39조 제1항 별표3의 개정규정은 2014학년도 1학기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제3조 (정원 및 수여학위 등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영상대학원 정원, 수료학점, 수여학위, 학위수여요건 변경 등에 따른 학칙 제4조 제1항 별표1, 제22조 별표2, 제39조 제1항 별표3, 제40조 별표4의 개정규정은 2014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하며, 2013학년도 이전 입학생은 종전의 학칙에 따른다.

부 칙(2013.12.16)

제1조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3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영상대학원 전공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영상대학원 전공명칭 변경에 따른 학칙 제4조 제1항 별표1, 제22조 별표2, 제39조 제1항 별표3의 개정규정은 2014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하며, 2013학년도 이전 입학생은 종전의 학칙에 따른다.

제3조 (경영전문대학원 학위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경영컨설팅학과의 박사 수여학위 표기 변경에 따른 학칙 제39조 제1항 별표3의 개정 규정은 2013년 8월 졸업생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02.20)

제1조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신학대학원 가톨릭사회복지학전공 석·박사통합과정 신설에 따른 제22조 별표2의 개정규정은 2014학년도 2학기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4.10.23.)

제1조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4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경영전문대학원 야간 석사과정 학기 변경에 따른 제6조 제1항, 제7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4학년도 1학기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5.2.9.)

이 개정 학칙은 2015년 3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5.29.)

제1조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5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술경영전문대학원 학위수여 요건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기술경영전문대학원 학위수여요건 변경에 따른 제40조 별표4의 개정규정은 2015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하며, 2014학년도 이전 입학생은 종전의 학칙에 따른다.

제3조 (정보통신대학원 전공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정보통신대학원 전공명칭 변경에 따른 학칙
제4조 제1항 별표1과 제39조 제1항 별표3의 개정규정은 2015년 8월 31일부터 시행하고, 2015학년도 2
학기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2015학년도 2학기 이전 입학생은 종전의 학칙에 따른다.

부 칙(2015.10.12)

제1조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5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대학원 아트&테크놀로지학과와 석사학위과정과 기술경영학 박사학위과정 신설에 따른
학칙 제4조 제1항 별표1, 제22조 별표2와 제39조 제1항 별표3의 개정 규정은 2016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별표 1>

각 대학원 과정별 학생 정원표

1. 대학원

| 과정별 | 계열별 | 학과별 | 입학정원 |
|-----------|------------|--------------|------|
| 석사학위과정 | 인문.사회 | 국어국문학과 | 570명 |
| | | 영어영문학과 | |
| | | 독어독문학과 | |
| | | 불어불문학과 | |
| | | 중국어문화학과 | |
| | | 사학학과 | |
| | | 철학학과 | |
| | | 종교학학과 | |
| | | 사회리학과 | |
| | | 심리학과 | |
| | | 신문화학과 | |
| | | 정치외교학과 | |
| | | 법학학과 | |
| | | 경영학학과 | |
| 소계 | 15개 학과 | | |
| 이학 | 이학 | 수리학과 | 570명 |
| | | 화학학과 | |
| | | 생명과학학과 | |
| 소계 | 4개 학과 | | |
| 공학 | 공학 | 전자공학 | 570명 |
| | | 화학·생명공학 | |
| | | 컴퓨터공학 | |
| 소계 | 4개 학과 | | |
| 융합 | 아트&테크놀로지학과 | | |
| 소계 | 1개 학과 | | |
| 학과 간 협동과정 | 학과 간 협동과정 | 과학커뮤니케이션협동과정 | 570명 |
| | | 여성학 | |
| 소계 | 학과 간 협동과정 | 동남아시아학 | 570명 |
| | | 바이오융합기술 | |
| 학.연협동과정 | 학.연협동과정 | 한국화학연구소 | 570명 |
| |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 |
| |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소 | |
| | | 한국생명공학연구소 | |
| | | 식품의약품안전청 | |
| | | 국립보건연구원 | |
| 소계 | 7개 연구소(원) | | |
| 합계 | 합계 | 570명 | |

| 과정별 | 계열별 | 학과별 | 입학정원 |
|--------|-----------|---|------|
| 박사학위과정 | 인문.사회 | 국어영독불중사철종사심신정법경 어영독불중사철종사심신정법경 국어영독불중사철종사심신정법경 국어영독불중사철종사심신정법경 국어영독불중사철종사심신정법경 국어영독불중사철종사심신정법경 국어영독불중사철종사심신정법경 국어영독불중사철종사심신정법경 국어영독불중사철종사심신정법경 국어영독불중사철종사심신정법경 | 211명 |
| | 소 계 | 15개 학과 | |
| | 이 학 | 수물화생 리화학명 | 과과과과 |
| | 소 계 | 4개 학과 | |
| | 공 학 | 전자공학 생명공학 컴퓨터공학 기계공학 | 과과과과 |
| | 소 계 | 4개 학과 | |
| | 학과 간 협동과정 | 바이오융합기술 기술경영학 | |
| | 소 계 | 2개 전공 | |
| | 학.연협동과정 | 한국화학연구소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소 한국생명공학연구소 식품의약품안전청 국립보건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 |
| | 소 계 | 8개 연구소(원) | |
| 합 | 계 | 211명 | |

석.박사통합과정의 정원은 박사학위과정에 있는 것으로 한다.

2. 각 전문대학원

| 과 정 | 대 학 원 | 학 과 | 전 공 | 입학정원 |
|--------|-----------|--|--|------|
| 석사학위과정 | 신학대학원 | | 신 학 전 공 철 학 전 공 사 회 복 지 학 전 공 가 톨 리 크 사 회 복 지 학 전 공 | 37명 |
| | 국제대학원 | | 국 제 통 상 국 제 금 용 국 제 관 계 한 국 . 동 아 시 아 | 50명 |
| | 영상대학원 | | 영 화 전 공 문 화 콘 텐 츠 전 공 영 상 공 학 . 예 술 공 학 전 공 | 44명 |
| | 경영전문대학원 | 경 영 학 과 경 영 컨 설 팅 학 과 **글로벌서비스경영학과 | | 230명 |
| | 기술경영전문대학원 | | *기 술 경 영 학 전 공 | 50명 |
| | 소 계 | | | |
| 박사학위과정 | 신학대학원 | | 신 학 전 공 가 톨 리 크 사 회 복 지 학 전 공 | 8명 |
| | 국제대학원 | | 국 제 통 상 국 제 금 용 국 제 관 계 한 국 . 동 아 시 아 | 5명 |
| | 영상대학원 | | 영 화 전 공 문 화 콘 텐 츠 전 공 영 상 공 학 . 예 술 공 학 전 공 | 6명 |
| | 경영전문대학원 | 경 영 학 과 경 영 컨 설 팅 학 과 **글로벌서비스경영학과 | | 10명 |
| | 소 계 | | | |
| 합 계 | | | | 440명 |

- (㉞) 1. 석·박사통합과정의 정원은 박사학위과정에 있는 것으로 함.
 2. * 표시는 동일 명칭으로 일반학과(전공)와 계약학과(전공)를 모두 운영하는 학과(전공)로 계약학과(전공)의 정원은 따로 있음.
 3. ** 표시는 WCU사업관련 학과임.

3. 각 특수대학원

| 과 정 | 대 학 원 | 학 과 | 전 공 | 입학정원 | |
|--------|---------|--|--|--|------|
| 석사학위과정 | 공공정책대학원 | 국제관계·통상외교학과 북한·통일정책학과 중국학과 사회복지학과 사회문화정책학과 행정·법무·환경학과 정치경영학과 | - | 94명 | |
| | 교육대학원 | - | 국영 어영 어교 역사교 수학교 체육교 평생교 교육공학-교육행정 상담심리 | 공공 전공 전공 전공 전공 전공 전공 전공 전공 전공 전공 전공 전공 | 140명 |
| | 경제대학원 | <u>경 제 학 과</u> | - | 125명 | |
| | 언론대학원 | - | 신문출판전 방송전 광고홍보전 연극영화전 미디어교육전 디지털미디어전 스포츠·엔터테인먼트전 | 공공 공공 공공 공공 공공 공공 공공 | 132명 |
| | 정보통신대학원 | - | 데이터사이언스전 사물인터넷전 정보보호전 소프트웨어공학전 | 공공 공공 공공 공공 | 75명 |
| 합 계 | | | | 566명 | |

〈별표 2〉

각 대학원 과정별 수료 학점

1. 대학원

| 학 과 \ 과 정 | 석 사 과 정 | 박 사 과 정 | 석.박사 통합과정 |
|-----------------------|-----------|---------------|-----------|
| 국 어 국 문 학 과 | 24 | 60 | 60 |
| 영 어 영 문 학 과 | 27 | 60(12) | |
| 독 어 독 문 학 과 | 24 | 60 | 60 |
| 불 어 불 문 학 과 | 24 | 60 | 60 |
| 중 국 문 화 학 과 | 24 | 60 | |
| 사 학 과 | 24 | 60 | 60 |
| 철 학 과 | 24 | 60 | 60 |
| 종 교 학 과 | 24 | 60 | 60(12) |
| 사 회 학 과 | 24 | 60 | 60 |
| 심 리 학 과 | 24 | 60 | |
| 신 문 방 송 학 과 | 24 | 60(18) | 60(12) |
| 정 치 외 교 학 과 | 24 | 60 | 60 |
| 법 학 과 | 27 | 60(6) | |
| 수 학 과 | 24 | 60(12) | 54(12) |
| 물 리 학 과 | 24 | 48(12) | 48(12) |
| 화 학 과 | 24 | 51(18) | 45(12) |
| 생 명 과 학 과 | 24 | 54(15) | 51(12) |
| 전 자 공 학 과 | 24 | 51(18) | 51(12) |
| 화 공 . 생 명 공 학 과 | 24 | 48(12) | 42(12) |
| 컴 퓨 터 공 학 과 | 24 | 45(9) | 45(9) |
| 기 계 공 학 과 | 24 | 48(12) | 42(6) |
| 경 제 학 과 | 27 | 60(18) | 60(12) |
| 경 영 학 과 | 27 | 60 | 54 |
| 무 역 학 과 | 33 | 60 | |
| 아트&테크놀로지학과 | 27 | | |
| 과 학 커 뮤 니 케 이 션 | 24 | | |
| 여 성 학 | 24 | | |
| 동 남 아 시 아 학 | 24 | | |
| 바 이 오 융 합 기 술 | 24 | 52(12) | 46(12) |
| 기 술 경 영 학 | | 60(15) | |

(주) 위 이수학점 중 ()안의 숫자는 연구학점으로 ()밖의 총학점에 포함됨.

2. 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

| 대 학 원 명 | 학 과(전 공) | 석사과정 | 박사과정 | 석·박사 통합과정 |
|-------------------|---------------------|----------------------|------|--------------|
| 신 학 대 학 원 | 신 학 전 공 | 45 | 90 | 84 |
| | 철 학 전 공 | 39 | - | - |
| | 사 회 복 지 학 전 공 | 45 | - | - |
| | 가톨릭사회복지학전공 | 45 | 60 | 75 |
| 국 제 대 학 원 | | 39 | 45 | - |
| 영 상 대 학 원 | 영 화 전 공 | 36 | 60 | - |
| | 문 화 콘 텐 츠 전 공 | 예술제작석사 36 예술석사 30 | 60 | - |
| | 영상공학·예술공학전공 | 30 | 60 | |
| 경 영 전 문 대 학 원 | 경 영 학 과 | 45 | 60 | - |
| | 경 영 컨 설 팅 학 과 | 45 | 60 | - |
| | 글 로 벌 서 비 스 경 영 학 과 | 27 | 60 | - |
| 기 술 경 영 전 문 대 학 원 | 기 술 경 영 학 전 공 | 45 | - | - |
| 공 공 정 책 대 학 원 | | 24 (사회복지학과 27) | - | - |
| 교 육 대 학 원 | | 24 | - | - |
| 경 제 대 학 원 | | 24 | - | - |
| 언 론 대 학 원 | | 24 | - | - |
| 정 보 통 신 대 학 원 | | 24 | - | - |

〈별표 3〉

각 대학원 학위과정별, 학과별 수여학위

1. 대학원

| 계열 | 학 과 | 석사학위 | 박사학위 |
|--------------|-----------------------|--------------------|----------------|
| 인문사회 | 국 어 국 문 학 과 | 문 학 석 사 | 문 학 박 사 |
| | 영 어 영 문 학 과 | 문 학 석 사 | 문 학 박 사 |
| | 독 어 독 문 학 과 | 문 학 석 사 | 문 학 박 사 |
| | 불 어 불 문 학 과 | 문 학 석 사 | 문 학 박 사 |
| | 중 국 문 화 학 과 | 문 학 석 사 | 문 학 박 사 |
| | 사 학 과 | 문 학 석 사 | 문 학 박 사 |
| | 철 학 과 | 문 학 석 사 | 철 학 박 사 |
| | 종 교 학 과 | 문 학 석 사 | 종 교 학 박 사 |
| | 사 회 학 과 | 문 학 석 사 | 문 학 박 사 |
| | 심 리 학 과 | 문 학 석 사 | 심 리 학 박 사 |
| | 신 문 방 송 학 과 | 문 학 석 사 | 문 학 박 사 |
| | 정 치 외 교 학 과 | 정 치 학 석 사 | 정 치 학 박 사 |
| | 법 학 과 | 법 학 석 사 | 법 학 박 사 |
| | 경 제 학 과 | 경 제 학 석 사 | 경 제 학 박 사 |
| | 경 영 학 과 | 경 영 학 석 사 | 경 영 학 박 사 |
| 무 역 학 과 | 경 영 학 석 사 | 경 영 학 박 사 | |
| 자 연 | 수 학 과 | 이 학 석 사 | 이 학 박 사 |
| | 수 물 리 학 과 | | |
| | 화 학 과 | | |
| 공 학 | 생 명 과 학 과 | 공 학 석 사 | 공 학 박 사 |
| | 전 자 공 학 과 | | |
| | 화 공 · 생 명 공 학 과 | | |
| | 컴 퓨 터 공 학 과 | | |
| 융 합 | 기 계 공 학 과 | <u>예 술 공 학 석 사</u> | - |
| | <u>아트&테크놀로지학과</u> | | |
| 학과 간 협동과정 | 과학커뮤니케이션 | 과학커뮤니케이션학석사 | - |
| | 여 성 학 | 여 성 학 석 사 | - |
| | 동 남 아 시 아 학 | 지 역 학 석 사 | - |
| | 바 이 오 융 합 기 술 | 공 학 석 사 | 공 학 박 사 |
| | <u>기 술 경 영 학</u> | - | <u>기술경영학박사</u> |

2. 전문대학원

| 대 학 원 | 학 과(전공) | 석사학위 | 박사학위 |
|-----------------|---------------------|---------------------------|-----------|
| 신학대학원 | 신 학 전 공 | 신 학 석 사(신학) | 신 학 박 사 |
| | 철 학 전 공 | 철 학 석 사(철학) | - |
| | 사 회 복 지 학 전 공 | 사회복지학석사(사회복지) | - |
| | 가 톨 릭 사 회 복 지 학 전 공 | 사회복지학석사 | 사회복지학박사 |
| 국제대학원 | 국 제 관 계 전 공 | 국 제 학 석 사(국제관계) | 국 제 학 박 사 |
| | | 국 제 학 석 사(국가정보) | |
| | 국 제 통 상 전 공 | 국 제 학 석 사(국제통상) | |
| | 국 제 금 융 전 공 | 국 제 학 석 사(국제금융) | |
| | 한 국 · 동 아 시 아 전 공 | 국 제 학 석 사(한 국 학) | |
| 국 제 학 석 사(동아시아) | | | |
| 영상대학원 | 영 화 전 공 | 예술제작석사(영화) | 영 상 학 박 사 |
| | 문 화 콘 텐 츠 전 공 | 예술제작석사(문화콘텐츠) | 영 상 학 박 사 |
| | | 예술석사 | |
| 영상공학·예술공학전공 | 공 학 석 사 | 공 학 박 사 | |
| 경영전문대학원 | 경영학과 | 경영학석사(관리) | 경 영 학 박 사 |
| | | 경영학석사(금융) | |
| | | 경영학석사(인사조직·전략) | |
| | | 경영학석사(회계) | |
| | | 경영학석사(마케팅) | |
| | | 경영학석사(재무관리/보험) | |
| | | 경영학석사(국제경영) | |
| | | 경영학석사(LSOM) | |
| | | 경영학석사(Business Analytics) | |
| | 경영학석사(경영정보시스템) | | |
| 경영컨설팅학과 | 경영학석사(관리·컨설팅) | 경 영 학 박 사 | |
| | 경영학석사(금융·컨설팅) | | |
| 글로벌서비스경영학과 | 경 영 학 석 사 | 경 영 학 박 사 | |
| 기술경영전문대학원 | 기 술 경 영 학 전 공 | 기술경영학석사(기술경영) | - |

3. 특수대학원

| 대 학 원 | 학 과 | 전공 | 석사학위 |
|-------------|-----|----------------|---------------------|
| 교육대학원 | | 국어교육전공 | 교육학석사(국어교육) |
| | | 영어교육전공 | 교육학석사(영어교육) |
| | | 역사교육전공 | 교육학석사(역사교육) |
| | | 수학교육전공 | 교육학석사(수학교육) |
| | | 체육교육전공 | 교육학석사(체육교육) |
| | | 평생교육전공 | 교육학석사(평생교육) |
| | | 교육공학-교육행정 융합전공 | 교육학석사(교육공학-교육행정 융합) |
| | | 상담심리전공 | 교육학석사(상담심리) |
| 경제대학원 | | 공공경제전공 | 경제학석사(공공경제) |
| | | 국제경제전공 | 경제학석사(국제경제) |
| | | 금융경제전공 | 경제학석사(금융경제) |
| | | 노동경제전공 | 경제학석사(노동경제) |
| | | 정보·기술경제전공 | 경제학석사(정보·기술경제) |
| | | 의회경제전공 | 경제학석사(의회경제) |
| | | 경제이론전공 | 경제학석사(경제이론) |
| 언론대학원 | | 신문출판전공 | 언론학석사(신문출판) |
| | | 방송전공 | 언론학석사(방송) |
| | | 광고홍보전공 | 언론학석사(광고홍보) |
| | | 연극영화전공 | 언론학석사(연극영화) |
| | | 미디어교육전공 | 언론학석사(미디어교육) |
| | | 디지털미디어전공 | 언론학석사(디지털미디어) |
| | | 스포츠·엔터테인먼트전공 | 언론학석사(스포츠·엔터테인먼트) |
| 정보통신 대학원 | | 데이터사이언스전공 | 공학석사(데이터사이언스) |
| | | 사물인터넷전공 | 공학석사(사물인터넷) |
| | | 정보보호전공 | 공학석사(정보보호) |
| | | 소프트웨어공학전공 | 공학석사(소프트웨어공학) |

3-1. 공공정책대학원

| 대학원 | 학 과 | 석사학위 |
|---------|-------------|--------------|
| 공공정책대학원 | 국제관계·통상외교학과 | 정치학석사(○○○) |
| | 북한·통일정책학과 | 정치학석사(○○○) |
| | | 북한학석사(○○○) |
| | 중국학과 | 정치학석사(○○○) |
| | | 중국학석사(○○○) |
| | 사회복지학과 | 사회복지학석사(○○○) |
| | 사회문화정책학과 | 행정학석사(○○○) |
| | | 사회학석사(○○○) |
| | 행정·법무·환경학과 | 행정학석사(○○○) |
| | | 법학석사(○○○) |
| | | 환경학석사(○○○) |
| 정치경영학과 | 정치학석사(○○○) | |

(주) 1) 석사학위란의 학위표기시 괄호안의 000은 해당 전공을 표기한다.

2) 학과별 전공편성은 공공정책대학원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별표 4〉

각 대학원 학위수여 요건

1. 대학원 및 각 전문대학원

| 대 학 원 명 | 석 사 학 위 과 정 | 박 사 학 위 과 정 |
|-----------|--|---|
| 대 학 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학기 이상 등록하여야 함. -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함. - 별표 2의 대학원 각 학과별 석사학위과정 수료학점을 모두 이수하고 총 평점평균이 3.0 이상이어야 함. - 학위논문이 논문심사위원회에서 합격판정을 받아야 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학기 이상 등록하여야 함. -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함. - 별표 2의 대학원 각 학과별 박사학위과정 수료학점을 모두 이수하고 총 평점평균이 3.0 이상이어야 함. - 학위논문이 논문심사위원회에서 합격판정을 받아야 함. |
| 신학대학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학기 이상 등록하여야 함. -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함. - 51학점(철학과 45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총 성적 평점평균이 3.0 이상이어야 함. - 학위논문을 선택한 학생은 수료 후 5년 이내에 학위청구논문이 논문심사위원회에서 합격판정을 받아야 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학기 이상 등록하여야 함. -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함. - 별표 2의 신학대학원 각 전공별 박사학위과정 수료학점을 모두 이수하고 총 성적 평점평균이 3.0 이상이어야 함. - 수료 후 5년 이내에 학위청구논문이 논문심사위원회에서 합격판정을 받아야 함. |
| 국제대학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학기 이상을 등록하여야 한다. - 45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총성적평점평균이 3.0 이상이어야 함. - 학위논문을 선택한 학생은 학위논문이 논문심사위원회에서 합격판정을 받아야 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학기 이상을 등록하여야 함. -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함. - 45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총성적평점평균이 3.0 이상이어야 함. - 학위논문이 논문심사위원회에서 합격판정을 받아야 함. |
| 영상대학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학기 이상 등록하여야 함. -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함. - 별표 2의 해당 전공별 석사학위과정 수료학점을 모두 이수하고 총 평점평균이 3.0 이상이어야 함. - 학위논문(예술제작석사과정은 졸업작품)이 논문심사위원회(졸업작품은 졸업작품심사위원회)에서 합격판정을 받아야 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학기 이상 등록하여야 함. -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함. - 별표 2의 해당 전공별 박사학위과정 수료학점을 모두 이수하고 총 평점평균이 3.0 이상이어야 함. - 학위논문이 논문심사위원회에서 합격판정을 받아야 함. |
| 경영전문대학원 | 각 과정별 학위수여 요건은 세칙으로 정한다. | |
| 기술경영전문대학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학기 이상을 등록하여야 함. -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함. - 45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총성적평점평균이 3.0 이상이어야 함. - 학위논문 또는 프로젝트가 학위논문심사위원회 또는 프로젝트심사위원회에서 합격판정을 받거나 이에 준하는 학점을 취득하여야 함. | - |

2. 각 특수대학원

| 대학원명 | 학위수여요건 |
|---------|--|
| 공공정책대학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학기이상을 등록하여야 함. -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함. - 28학점(사회복지학과 30학점)이상을 취득하고 총성적평점평균이 3.0이상이어야 함. - 수료 후 5년 이내에 학위청구논문이 논문심사위원회에서 합격판정을 받거나 이에 준하는 학점을 취득하여야 함. |
| 교육대학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학기이상을 등록하여야 함. -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함. - 30학점이상을 취득하고 총성적평점평균이 3.0이상이어야 함. - 수료 후 5년 이내에 학위청구논문이 논문심사위원회에서 합격판정을 받아야 함. |
| 경제대학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학기이상을 등록하여야 함. -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함. - 28학점이상을 취득하고 총성적평점평균이 3.0이상이어야 함. - 수료 후 10년 이내에 학위청구논문이 논문심사위원회에서 합격판정을 받거나 이에 준하는 학점을 취득하여야 함. |
| 언론대학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학기이상을 등록하여야 함. -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함. - 30학점이상을 취득하고 총성적평점평균이 3.0이상이어야 함. - 수료 후 8년 이내에 학위청구논문이 논문심사위원회에서 합격판정을 받거나 이에 준하는 학점을 취득 또는 대학원이 지정한 논문대체실습작품이 심사에 통과되어야 함. |
| 정보통신대학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학기이상을 등록하여야 함. -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함. - 30학점이상을 취득하고 총성적평점평균이 3.0이상이어야 함. - 수료 후 7년 이내에 학위청구논문이 논문심사위원회에서 합격판정을 받거나 과제별 워크숍을 이수하여야 함. |

석 제 호

학 위 기

이름 : 홍길동
1978년 1월 14일생

이 이는 우리대학교 대학원 학과(전공) 소정의
전과정을 이수하고 ○○학 석사의 자격을 갖추었
음을 인정함.

서강대학교 () 대학원장 ○ ○ ○

위의 인정에 의하여 ○ ○학 석사 학위를 수여함

년 월 일

서강대학교

이사장 ○ ○ ○

총장 ○ ○ ○

Be as proud of Sogang as Sogang is proud of you

학위번호 : 서강대 0000(석) 0000

석 제 호

학 위 기

이름 : 홍길동
1978년 1월 14일생

이 이는 우리대학교 대학원 학과(전공)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고 ○ ○ 학 석사(○○○)의 자격을 갖추었음을 인정함.

서강대학교 () 대학원장 ○ ○ ○

위의 인정에 의하여 ○ ○ 학 석사(○○○) 학위를 수여함

년 월 일

서강대학교

이사장 ○ ○ ○

총장 ○ ○ ○

Be as proud of Sogang as Sogang is proud of you

학위번호 : 서강대 0000(석) 0000

박 제 호

학 위 기

이름 : 홍길동
1978년 1월 14일생

이 이는 우리 대학교 대학원 학과(전공)
박사과정을 이수하고 소정의 시험과 논문 심사에 합
격하여 ○○학 박사의 자격을 갖추었음을 인정함.

서강대학교 () 대학원장 ○ ○ ○

위의 인정에 의하여 ○ ○학 박사 학위를 수여함.

년 월 일

서강대학교

이사장 ○ ○ ○

총장 ○ ○ ○

Be as proud of Sogang as Sogang is proud of you

학위번호 : 서강대 0000(박) 0000

박 제 호

학 위 기

이름 : 홍길동
1978년 1월 14일생

이 이는 우리 대학교 대학원 학과(전공)
박사과정을 이수하고 소정의 시험과 논문 심사에 합
격하여 ○○학 박사(○○○)의 자격을 갖추었음을 인
정함.

서강대학교 () 대학원장 ○ ○ ○

위의 인정에 의하여 ○ ○ 학 박사(○○○) 학위를 수여함.

년 월 일

서강대학교

이사장 ○ ○ ○

총장 ○ ○ ○

Be as proud of Sogang as Sogang is proud of you

학위번호 : 서강대 0000(박) 0000

명박 제 호

학 위 기

이름 : 홍길동
1978년 1월 14일생

이 이는 ○○○○○○○○○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공적을 나타냈)기에 그 공적을 찬양하고자 대학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명예○○학 박사학위 수여를 추천함.

서강대학교 대학원장 ○ ○ ○

위의 추천에 의하여 명예 ○ ○ 학 박사학위를 수여함.

년 월 일

서강대학교

이사장 ○ ○ ○

총장 ○ ○ ○

Be as proud of Sogang as Sogang is proud of you

학위번호 : 서강대 0000(명박) 0000